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474

2020년 6월 16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5월 28일, 이광성 의원 외 10명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
다. 상정일자 : 제30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1년 6월 16일 상정·수정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이광성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현재 지구온난화 및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서울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회환경교육을 신설함(안 제7조제2호의2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교육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: 이재효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공무원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, 현재도 서울시는 소속기관인 인재개발원을 통해 환경교육에 대한 집합교육과 이러닝, 공직자 기후변화 특강 등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별다른 의견은 없음.

다만, 현행 조례 제7조제2호에 환경교육 활성화 대상에 공공기관, 기업 및 사회단체가 규정되어 있는 바, 별도 호를 신설하지 않고 동 호에 서울시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.

또한, 현행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는 법률마다 다르고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음.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(안)
제7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	제7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----------.	제7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1. (개정안과 같음)
2. 공공기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	2. 공공기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	2. 시,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
<신 설>	2의2.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실시	<삭 제>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	3. ~ 6. (개정안과 같음)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수정안 요지

○ 현행 조례에서 환경교육 활성화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,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일부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
8. 심사결과: 수정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474

제안년월일 : 2020년 6월 16일
제 안 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현행 조례에서 환경교육 활성화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,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일부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○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대상에 시 공무원을 포함함.

3. 참고사항: 생 략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한다.

2. 시,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7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	제7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----------.	제7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1. (개정안과 같음)
2. 공공기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	2. 공공기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	2. 시,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
〈신 설〉	2의2.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실시	〈삭 제〉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	3. ~ 6.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시,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 1. (생 략) 2. 공공기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. ~ 6. (생 략)	제7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시,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. ~ 6. (현행과 같음)